

회사소개

회사소개

SU지주

SU Holdings Co., Ltd.

안전한 일터! 건강한 미래!
SU세이프어스

회사명	(주)SU지주
브랜드	세이프어스
소재지	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안로 1126, 3층 (가산동, 대륭21차)
연락처	T. 02-567-7904 F. 02-567-7905 E. safety@safeus.co.kr
홈페이지	www.safeus.co.kr

⊕ 안전·보건 주요사업

- 산업안전컨설팅 [제조업, 서비스업, 공공기관] 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)
- 직무스트레스 평가 (산업안전보건법 제5조)
- 안전·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)
- 위험성평가 컨설팅(인정) 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)
-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(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)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(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)
- 자율안전확인신고(KCs)컨설팅 (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)
- 안전검사 컨설팅 (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)
- 안전용품 MRO(구매대행)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)
- 전기안전시험 [접지연속성시험, 절연저항시험, 내전압시험, 잔류전압시험] (IEC 60204-1)
- KC인증 컨설팅 [어린이 제품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]
-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4호)

📖 사업실적

- 안전검사 컨설팅
 - (주)JGCNS, (주)티몬, SK하이이엔지, (주)CJENM, 롯데로지스틱스(주), 동원에프앤비(주) 외
- 산업안전컨설팅
 - 전 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, 공공기관 등 다수
- 안전·보건교육
 - 한국환경공단, 한전원자력연료(주), LG전자(주), (주)동원F&B, (주)판토스, (주)대우건설, 서초구청 외
- 위험성평가
 - 제조·서비스업: 현대파텍스(주), (주)동원F&B, JW중외제약(주), (재)KTR, 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 외
 - 건설업: 한국텔레콤(주), (주)수정환경플랜트, 어반종합건설(주), (주)무궁화건설 외
 - 공공기관: (재)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임업진흥원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경기도문화의전당 외
-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
 - 제조·서비스업: (주)카카오, LG전자(주), (주)녹십자, 엘비휴넷(주), 한화에너지(주), 국군수도병원 외
 - 토목/건설업: (주)효성, (주)대우건설, (주)한라, (주)코오롱글로벌, (주)한진중공업 외
 - 공공기관: 공항철도(주), (주)강원랜드, 한국임업진흥원, 한국중부발전(주), 서울구치소 외
- 자율안전확인신고(KCs)
 - 전 지역(컨베이어, 산업용로봇, 혼합기, 분쇄기 등) 5,300 형식 이상 신고 진행(20.12.기준)

컨베이어
사용하시나요?



사용자 필수확인
컨베이어 안전검사
꼭 받으세요!



SU지주
SU Holdings Co., Ltd.

안전한 일터! 건강한 미래!
SU세이프어스



컨베이어 안전검사

안전검사란?

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※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)

안전검사 컨설팅이란?

안전검사 실시 전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조치를 통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
법적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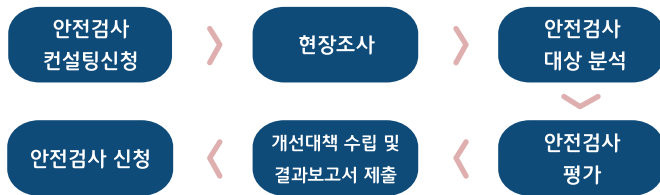
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

-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2호]
- 안전검사 고시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43호]

의무자

-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
-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

컨설팅 절차



과태료

구분	과태료	관련근거	비고
안전검사 미실시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	사용중지 명령

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

설비 설치일	안전검사 기한
2017.10.28. 이전 설치·사용 설비	2018.12.31.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2017.10.29. 이후 설치·사용 설비	설비 설치일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

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

대상	적용범위
컨베이어	재료·반제품·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·체인·롤러·트롤리·버킷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. 다만,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
	가.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.2kW 이하인 것
	나.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·체인·롤러·트롤리·버킷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
	다.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
	라.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
	마.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
	바. 항만법,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
	사.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·체인·롤러·트롤리·버킷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
	아. 밀폐 구조의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
	자.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
차. 최대 이송속도가 150mm/s 이하인 것 또는 구간	
카.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 되는 것 또는 구간	
타.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(mobile equipment) 시스템 또는 구간	
파.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(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) 시스템 또는 구간	
※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(제어반 설치 단위)로 구분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.	

검사 수수료

안전검사대상	안전검사 수수료	
컨베이어	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이하	58,000
	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초과	58,000원에 20m초과한 10m마다 6,000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5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

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 ※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

안전검사기관 현황 및 홈페이지

대한산업안전협회	http://www.safety.or.kr (☎02-860-7180)
한국안전기술협회	http://www.korsta.or.kr (☎1577-7514)
한국승강기안전공단	http://www.koelsa.or.kr (☎1566-1277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http://www.kosha.or.kr (☎1544-3089)